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62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 박상혁 · 김선민 · 박성준

김남희 • 한민수 • 이인영

최기상 • 박균택 • 한준호

이병진 · 이연희 의원(11

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에게 기업 결합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 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결합심사는 법률적 검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의 시장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심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시 주식·자산의 인수가액을 고려 하여 신고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2항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결합 심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
	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u>다.</u>
① (생 략)	◎ (현행 제12항과 같음)